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12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0423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5. 18.
판 결 선 고	2016.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9,366,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12

가. 원고는 2013. 11. 1. B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478,113,960원에 매수한 후 2013. 1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11. 12.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세율(1,000분의 40)에 따른 취득세 19,124,550원, 지방교육세 1,912,450원, 농어촌특별세 956,220원 합계 21,993,22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5.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15.부터 2015. 1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C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2014. 5. 16.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농어촌특별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7,459,490원(본세 38,249,110원, 무신고가산세 7,649,82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560,560원), 농어촌특별세 3,980,960원(본세 3,824,9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56,050원, 위 각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4. 1. 1. 부터 부과처분일인 2014. 5. 16.까지이다)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합계 9,366,430원을 부과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11. 충청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4. 9. 5.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1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6. 18. 기각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12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1, 2, 을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6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유흥접객원을 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유흥주점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3. 12. 5. C에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그런데 C가 위 특약을 위반하여 2014. 5. 7.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채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C가 2014. 5. 7. 전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았으므로 2014. 5. 7.에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에 따라 그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C의 채무불이행과 기망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까지는 C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유흥주점에 중과되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12

1) B는 2013. 7. 11. 식품위생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업태 : 룸살롱)허가를 받았는데, C가 B의 위 유흥주점영업을 양수하여 2013. 12. 12. 위 영업허가의 영업자명의가 C로 변경되었고, 상호와 업태는 변경되지 않았다. C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노래방기기, 쇼파, 탁자 등 유흥주점영업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3) 원고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제출한 C, D과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부가세 25만 원은 별도로 지급해야 되는 금액임. E 유흥주점영업장에서는 절대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 위반 시 임대인의 직권으로 영업장소를 폐쇄하고,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는 임차인들에게 있으며, 계약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임차인들이 배상하기로 합의한다. E 영업장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의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성매매, 알선 등의 불법영업 시에는 임차인들은 즉시 영업장을 명도하고 모든 시설을 반환하기로 합의한다." 라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

4) C가 천안세무서에 위 'E' 유흥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시 별지로 첨부하여 제출한 '상가임대차계약 내용'에는 '영업장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성매매, 알선 등의 불법 영업 시에는 임차인은 즉시 영업장을 명도하고 모든 영업시설을 반환하여야 한다. 영업장에서 불법 영업 시에는 임대인의 직권으로 영업장을 폐쇄하고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는 임차인에게 있으며 임대인의 모든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C의 상가임대차계약증 매매 시에는 시설권리금으로 임대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 상가임대차계약은 공정증서로 서로의 계약을 확약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12

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위 'E' 유흥주점의 2014. 1.부터 2014. 6.까지의 매출건수, 매출액, 매출 1건당 평균매출액은 다음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순번	일시	매출건수	매출액(원)	매출 1건당 평균매출액(원)
1	2014. 1.	29	8,904,000	307,034
2	2014. 2.	31	9,030,000	291,290
3	2014. 3.	30	8,427,000	280,900
4	2014. 4.	32	6,020,000	188,125
5	2014. 5.	30	9,372,000	312,400
6	2014. 6.	35	11,304,000	322,971

[인정근거] 갑 제3, 9호증, 을 제5,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은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 : 도박장 · 유흥주점영업장 · 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들고 있고, 다만 같은 호 단서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6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 중 하나로, 유흥주점영업 중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의 영업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12

하는지 여부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참조).

한편,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추었고, C가 위 'E' 유흥주점에서 2014. 5. 7. 이전에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3. 11. 1.로부터 60일 이내인 2013. 12. 31.까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12

는 것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액, 농어촌특별세액과 기납부한 취득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의 차액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4. 1. 1.부터 이 사건 처분일인 2014. 5. 16.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전소유자인 B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노래방 기기 등 시설을 갖추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임대한 후 C가 B의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승계하여 2013. 12. 12. 위 유흥주접영업허가의 명의가 C로 변경되었고, 업태도 룸살롱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따라서 C가 언제든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원고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E 유흥주점영업장에서는 절대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할 수 없다'는 특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C가 천안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상가임대차계약 내용'에는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다른 특약 중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특약(성매매 및 알선 금지, 임대차계약 위반 시 임대인 직권으로 영업장소 폐쇄)은 기재되어 있으나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없다는 특약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12

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약정(임대차계약서 공증, 권리금 지급)이 기재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이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달라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C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통상 동일한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경우와 고용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는 경우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1건당 매출액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2014. 1.부터 2014. 6.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1건당 매출액을 살펴보아도 C가 유흥접객원을 처음으로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 5. 7. 전후로 그 액수에 별다른 변동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승만

판사 김민경

판사 윤민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12

(별지 1)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redacted]시 [redacted]구 F에 있는 G건물

[도로명 주소][redacted]시 [redacted]구 H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2층, 지상 10층 숙박시설(1, 2종 근린생활시설)

지2층 497.81㎡

지1층 497.81㎡

1층 394.51㎡

2층 392.33㎡

3층 392.33㎡

4층 392.33㎡

5층 392.33㎡

6층 392.33㎡

7층 392.33㎡

8층 392.33㎡

9층 392.33㎡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제3층 3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335.69㎡

(대지권의 표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12

토지의 표시 : [redacted]시 F 대 596.2㎡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596.2분의 66.5154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12

(별지 2)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12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6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12

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 나이트클럽 · 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9-12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